

#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창업육성 프로그램

##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

1

#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**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거점 사회혁신 분야 창업기업 및 소셜 벤처 발굴·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
- 선정규모:** 총 10개사(라이징 기업)  
※ 1, 2차 공고를 통하여 리더기업 2개사 및 팔로우기업 3개사, 라이징기업 15개사 선정 완료
- 선정대상:**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·예비창업자 및 소셜벤처
- 지원내용**
  - (사무공간·인프라지원) 공유 오피스·네트워킹 지원 등
  - (사업화지원) 사회적경제분야 창업기업 발굴, 전문 멘토링, 투자유치, 글로벌 진출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
- 계약기간:** 2026. 01. ~ 2026. 11.  
○ 기본 1년, 6개월 단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(최대 3년)  
※ 단, 계약기간은 1, 2차 공고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, 본 3차 모집의 실제 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평가점수	조치사항
70점 이상	연장 계약
50점 이상 ~ 70점 미만	활동 계획 및 이행 확약서 작성을 통한 연장
50점 미만	계약 해지

- 중간평가 기준(안)

구분	평가기준		구분				배점
			100.0%	70.0~99.9%	50~69.9%	0.0~49.9%	
라이징 기업	정량	공간 사용 일수	40	30	20	10	40
			100.0%	70.0~99.9%	50~69.9%	0.0~49.9%	
	정량	액셀러레이팅 참여율	40	30	20	10	40
			우수	보통	미흡		
	정성	기업 성장 및 고도화	20	15	10		20
			계				

※ 중간평가기준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절사하여 산정

## ○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「팔로우」 안내

구 분	내 용	
공 간 명	경기도 사회혁신공간 팔로우	
주 소	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,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6층	
시설규모(6층)	면적: 782.67m <sup>2</sup> / 사무공간: 4실(601호~604호)	
공간사진		
모집기업 수	총 30개사	
공간별 면적	601호 83.73m <sup>2</sup> (24평형)	리더 기업 2개사
	602호 84.14m <sup>2</sup> (24평형)	팔로우 기업 3개사
	603호 126.21m <sup>2</sup> (38평형)	라이징 기업 25개사
	604호 125.80m <sup>2</sup> (38평형)	

###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「팔로우」 ('25. 11월초 개소)

- 추진방향 : 옛 청사의 역사.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거점 공간 마련
  - 공간목적 :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. 연결. 사회적가치를 통해 사회혁신을 이루는 공간
  - 사업내용 :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및 사회혁신 제품.콘텐츠 체험 등 도민 개방공간으로 구현
- [지하1~지상2층] 컨퍼런스홀, 팝업스토어, 공유오피스 등 [3~6층] 입주기업, 창업육성 프로그램 [7~8층] 사경원

	 [1층] 사회혁신 체험 및 홍보공간
경기도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외관	 [2층] 사회혁신 협업 공간(공유오피스 등)

단계별 요건 및 모집기업 수

참여기업 단계별 세부자격 및 요건

구분	자격요건	모집기업 수	세부요건
라이징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공고일 기준 창업희망자</li><li>▪ 예비, 창업 1년 미만</li></ul>	10개사	- 매월 12일 이상 공간 사용

참여기업 의무사항

기업 유형별 의무사항

구분	특화활동
라이징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주 3일(월 12일) 이상 사용 필수 ※ 예약 시스템 활용</li><li>- 창업육성 프로그램(교육, 컨설팅 등) 필수 참여 및 공간 운영지침 준수</li><li>- 그 외 운영기관이 정하는 기타사항 이행</li></ul>

사업자주소지 이전 및 설립 및 진입 등

구분	사업자 등록 및 주소지 이전	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진입
라이징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창업희망자: 계약 후 6개월 이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</li><li>- 기창업자: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소 이전(본점 또는 지점)</li></ul>	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진입 필수

- 신청자격: 아래 지원대상 신청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 
 선정규모: 총 10개사

구분	신청 요건	
예비창업자		<p>①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  ※ 선정 이후, 계약기간 내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및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진입 필수  ※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입주를 통한 등록 가능</p>
사회적경제조직		<p>①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제2조에 따른 ①(예비)사회적기업, ②(예비)마을기업, ③자활기업, ④(사회적)협동조합, ⑤소셜벤처이며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 기업인 자  ※ 참여기업 단계별(리더·팔로우·라이징) 업력 요건 충족 필수</p>
사회적 경제기업 진입 희망조직	이종창업	<p>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 ②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 ※ 조건 ① 또는 ② 충족 필요  ※ 개인·법인 모두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,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조직 또한 신청 가능  ※ 선정 이후, 계약기간 내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(사업자등록) 해야 하며,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진입 필수</p>
	동종유지	<p>①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 ②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  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으로 참여기업 단계별 업력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※ 조건 ① 또는 ② 충족 필요 및 ③ 필수  ※ 선정 이후, 계약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진입 필수</p>
조건부 선정	경기도 외 소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등록증 상 경기도 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, 선정 이후 2026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로 본점 또는 지점 이전·설립 필수  ※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입주를 통한 이전·설립 가능</li> </ul>
	사회적 경제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경우, 계약종료일 2026년 11월까지 ①(예비)사회적기업, ②(예비)마을기업, ③자활기업, ④(사회적)협동조합, ⑤소셜벤처, ⑥장애인표준사업장 중 하나 이상 인증·등록 필수</li> </ul>
	자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활기업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, 사업기간 내 법인 전환 필수</li> </ul>

- \* 신청 요건 미이행 시 사업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
\*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 확인(사회적기업 포털:[www.seis.or.kr/subPage.do?menuId=20101](http://www.seis.or.kr/subPage.do?menuId=20101))

## □ 신청 제외 대상

### < 신청 제외 대상 내용 >

####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##### 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####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##### 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#### 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##### ▶ 지원제외 대상 업종(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)

1. 일반유통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1)
2. 무도유통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56212)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91249)
4.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#### ④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「동 사업 접수마감일」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(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·수행 불가)

##### ▶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 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(시제품 제작비 등)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(별첨 참고)

※ 지자체 지원사업은 동일아이템·동일비목 사용이 아닐 경우

#### ⑤ 당해연도 하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

- 타 사업내,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- 민간사업지원금(직접지원된 사업화자금) 지원 이외 교육, 컨설팅 등 비금전적(간접) 제공되는 경우 제외
- 당해연도 하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

##### ▶ 중복지원 불가 사업

1.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('24년 해당사업 출입 기업은 가능)
2. 2024~25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글로벌 진출 분야 참여기업

#### 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####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우리은행 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 ※ 추후 사업비 지원 시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필요

#### ⑧ 2025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#### ⑨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#### ⑩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#### ⑪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: 사회적 물의 발생, 보조금 부정 수급, 회계 부정, 횡령·배임, 뇌물수수, 성범죄 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혐의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사무 공간 지원

-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6층 공유 오피스 지원
- 책상, 의자, 캐비넷, 서랍 등 사무용가구 및 회의실 등 기본 인프라 지원
- 임대 및 관리비 무료 지원(※ 프로그램 참여 필수요건 충족 시)

구분	내용		모집 기업 수
	구분	규모	
라이징 기업 (604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유 오피스 사용</li> <li>▪ 주 3일(월 12일) 이상 사용 필수 ※ 예약 시스템 활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25.80m<sup>2</sup>(38평)</li> <li>• 책상 및 의자 각 20개</li> <li>• 캐비닛 10개</li> </ul>	10개사

사업화 지원

- (사업화 지원) 사회적경제분야 창업기업 발굴, 전문 멘토링, 투자유치, 글로벌 진출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

구분	지원사항
성장지원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업진단 및 1:1 맞춤형 컨설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 및 창업진단)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으로 위한 현황 분석 및 컨설팅 수요 조사 시행</li> <li>- 사업화 단계 분석) BM수립, MVP 수립·검증·개선, 수익화 실현, 투·융자 유치 등 총 8단계별 사업화 단계 진단 및 목표 설정</li> <li>- 액셀러레이팅 전략 수립) 진단 및 사업화 단계 맞춤형 컨설팅, 교육, 오픈이노베이션, 투자상담회, IR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전략 수립</li> <li>- 특화 액셀러레이팅 설정) 사회적경제분야 창업 및 기업 운영 전문 액셀러레이팅 외 BM고도화, 브랜딩 및 마케팅, 생산기술, 경영관리, 연구·개발, 투자유치, 해외진출, IP 등 외부 전문가 맞춤 컨설팅 진행</li> <li>- 사업 모니터링) 사업화 진행 현황 점검, 계량 및 비계량 성과(목표 및 달성)점검, 상시 모니터링 진행</li> </ul> </li> <li>▪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업 및 기업 역량 강화) BM고도화, 홍보·마케팅, 특허 및 법률, 유통 및 수출입, 재무회계, 투자유치,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운영</li> <li>- 사회적경제 전문화) 사회적가치지표 측정, 사회적경제 트렌드, 선배 기업 노하우, 사회적기업 운영 등 특화 교육 운영</li> </ul> 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확장 및 고도화 프로그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 홍보) 기업 대외 활동 및 투자유치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</li> <li>- 투자 유치) 모의 및 IR 데모데이, 투자상담회 개최</li> <li>- POC 검증) 대·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및 PoC 연계</li> <li>- 판로 개척) 우수기업 인·아웃바운드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·외 박람회 참가</li> <li>- 기업 선진화)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선진 사례 도입을 위한 해외 우수 사회 혁신 관련 주요 기관 방문 및 박람회 참가</li> </ul>
커뮤니티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내부 네트워킹)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입주 및 멤버십 기업 간 정기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</li> <li>■ 외부 네트워킹) 사회적경제분야 우수 기업 및 창업가 간 정기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</li> <li>■ 대외 협력 확장) 대·중견 기업 및 투자자 간 비즈 밋업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</li> </ul>
기타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선정기업 대외 홍보 리플렛(One Page Proposal) 제작</li> <li>■ 보도자료 배포, 온·오프라인 사업 성과 홍보 지원</li> <li>■ 선정기업 유형 분석을 통한 경제원 및 외부 연계 사업화 지원</li> <li>■ 선정기업, 사회적경제 선배 기업, 유관 기업, 대중견 기업, 투자자, 전문가 등 지속적 네트워킹 지원</li> <li>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</li> </ul>

## 4

## 신청 및 접수

신청대상: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분야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자

신청·접수방법

(공모 신청기간) 2026. 01. 12.(월) ~ 01. 30.(금) 15:00까지

(접수방법) 이메일([sip@pgvtrs.com](mailto:sip@pgvtrs.com))통한 온라인 신청·접수

※ 26. 01. 30.(금) 15시00분 정각 매일 수신 시스템 자동 중단 및 접수 마감

\*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우편, 방문 접수·제출 불가

(제출서류)

구분	연번	서류명	예비창업자	사업자보유
필수	1 [별지1]	불임1 참여요건 자가진단표	✓	✓
	2 [별지2]	불임2 사업신청서	✓	✓
	3 [별지3]	사업 신청 확약서	✓	✓
	4 [별지4]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✓	✓
	5 [별지5]	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✓	✓
	6 [별지6]	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	✓	✓
	7	사업자등록증		✓
	8	법인등기부등본		✓
	9	2023~2024 재무제표		✓
	10	4대보험가입자명부		✓
	11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	✓
해당시	12	가점 증빙서류		
	13	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		
	14	사회적경제인증서류		
	15	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		
	16	기타 증빙서류		

## □ 심사 및 선정

### ○ (추진일정)

서류접수	①서류심사	②서면심사	③발표심사	선정 및 계약체결
공고 및 신청서 접수 (01. 12. ~ 01. 30.)	지원자 적격여부 검토 (02. 02. ~ 02. 03.)	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자 심사 (02. 03. ~ 02. 04.)	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자 심사 (02. 06.)	심사결과 발표 및 선정·계약체결 최종선정: 02. 06. 계약체결: 2월 중

※ 추진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- (선정방법)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
- (심사위원회) 창업 전문기관(업),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
- (적격심사 기준)

내용	검토 결과	
▪ 공고문 내 기재된 신청자격 부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▪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▪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자가진단표 제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### ○ (1차 서면심사)

-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산출평균하여 총 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
- 1차 심사 기준

심사항목	세부 심사항목 계	배점
사회적가치(30점)	•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	10
	•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	10
	• 창출가능한 사회적가치(사회적 임팩트) 여부	10
사업성(30점)	•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0
	•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현실성	10
	• 사업의 확장가능성과 파급효과	10
추진역량(20점)	• 참여 이후 성장 가능성 (매출, 고용향상 등)	10
	•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	10
기대효과(20점)	• 사회혁신공간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취지 부합도	10
	• 성장공간(6층) 활용 계획 및 공간을 통한 성장	10
가점(8점)	•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8

※ 가점은 1차 서류평가만 적용

## ○ (2차 발표심사)

-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·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
- 2차 심사 기준

심사항목	세부 심사항목	배점
	계	100
사회적가치(30점)	•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	10
	•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	10
	• 창출가능한 사회적가치(사회적 임팩트) 여부	10
사업성(30점)	•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0
	•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과 현실성	10
	• 사업의 확장가능성과 파급효과	10
추진역량(20점)	• 참여 이후 성장 가능성 (매출, 고용향상 등)	10
	•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	10
기대효과(20점)	• 사회혁신공간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취지 부합도	10
	• 성장공간(6층) 활용 계획 및 공간을 통한 성장	10

## ○ (우대사항) 서류 심사 가산점(최대 8점) 부여

< 서면심사 가점 대상 >

연번	가점 대상	가점	제출여부	제출서류
1	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(예비)사회적기업 인·지정서,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신고(인가)증, (예비)마을기업 지정서, 자활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	5점	<input type="checkbox"/>	(유효기간 내) 사회적경제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	임팩트유니콘 선정기업	5점	<input type="checkbox"/>	별도제출서류 없음
3	(22~24년)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, 도약패키지, R&D규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제재 등 중도 협약해지 없이 정상 사업 종료 기업	5점	<input type="checkbox"/>	협약서
4	'23~2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 참여기업 중 탁월, 우수 기업	3점	<input type="checkbox"/>	SVI측정 확인서

\*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불인정(가점은 서면심사에만 적용), 중복 적용 가능

**신청시 유의사항**

- 신청 마감일에는 이메일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온라인(이메일)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사업에 참여하는 본인(또는 기업)이 신청하여야 함

 **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**

-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
 **선정 후 유의사항**

-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계약기간 중 확인된 경우,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사업부진, 사회적물의 발생, 상주의무 미준수, 사업비 횡령, 기물파손 등 부정한 사유발생 시, 사업지원 중단 또는 공간 퇴거에 취해질 수 있음
- 계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거나, 계약해지, 제재 및 공간 퇴거 조치가 될 수 있음

 **선정자 의무 및 역할**

- 선정자는 「경기도 사회혁신공간 창업육성 프로그램 세부 관리지침」, 계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(3년간 사후성과 등), 평가 등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액셀러레이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(경영부진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)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 등)를 제외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- 계약 체결 기간 이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, 차순위 지원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, 차순위 지원자가 발표평가 전체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선정함

문의처: 주식회사 피지벤처스

문의방법

(유선) 070-4135-5510 / 070-4135-5511

\* 전화문의 : 평일(월~금) 10:00-17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)

(e-mail) [sip@pgvtrs.com](mailto:sip@pgvtrs.com)